



연구논문

경신처분과『국조속오례의』수록 의례의 정치적 기획

<친립전향축의>와 <상존호책보의>를 중심으로

박수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조선시대사 전공

harksa08@gmail.com

I. 머리말

II. 경신처분과 의례 정비의 정치적 배경

III. <친립전향축의>와 <상존호책보의>의 시행과 정치적 함의

IV. 『속오례의』수록과 의례의 정치적 제도화

V. 맷음말

I. 머리말

국가 의례는 단순한 문화 행위를 넘어 통치 권위를 제도화하고 정치 질서를 시각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인식은 당·청 등 동아시아 제국에서 의례를 통한 황제권 정당화 및 문화적 우위 확보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확인된다.¹

특히 조선 후기 국가 의례는 전통의 형식적 계승이 아니라, 국왕 권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통치 질서를 재편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영조의 통치 전략 속에서 국가 의례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기획되고 실현되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정치사와 의례 제도의 교차 지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정치사와 의례 연구의 연계를 시도한 성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먼저, 조선 후기 치밀한 정치사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영조 대 연향이 지난 정치적 함의와 실행 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도적 연구²는 정치사 기반의 의례 연구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후에도 조선 후기 정치사와 국가 의례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³은 의례 편찬이 지난 정치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 이 글과 관련된 논지의 발단은 2017년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IV장의 작성 당시 이루어졌다. 이 학위 논문을 전반적으로 가다듬고 가독성을 높여 2024년에 솔벗총서 25권 단행본으로 출간했으며, 이 책의 제4장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박수정, 『국조속오례의, 그 정치성을 읽다』(파주: 지식산업사, 2024), 217~221쪽, 240~249쪽, 345~351쪽.

1 Howard J. Wechsler, *Offerings of Jade and Silk: Ritual and Symbol in the Legitimation of the T'ang Dynasty*(1st ed.) (Yale University Press, 1985), pp. 1~313; James L. Hevia, *Cherishing Men From Afar: Qing Guest Ritual and the Macartney Embassy of 1793*(Duke University Press, 1995), pp. 116~134.

2 정만조, 「英祖代 御宴의 設行論議에 관한 一考察」, 『한국학논총』20(1997), 73~95쪽.

3 정만조, 「조선의 禮治와 國朝五禮儀 편찬」, 『조선왕조의 五禮』(장서각 아카데미 제1회 전문과정, 2012a), 7~19쪽; 정만조, 「영조시대의 이해방향: 繼述과 变화」, 『영조와 영조시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왕실문화강좌, 2016), 7~21쪽.

밝히는 데 기여했다.

앞선 연구들을 기반으로 정치사와 의례 제도 연구의 융합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국조속오례의』(이하 『속오례의』) 편찬 과정을 정치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⁴와, 존호 의례를 정치적 국면 변화와 연계하여 고찰한 여러 연구⁵ 등은 조선 후기 의례가 왕권 강화 및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아울러 특정 의례 항목을 정치적 배경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⁶ 그리고 영조 대 국왕이 직접 행한 다양한 친림(親臨) 의례의 정치적 성격과 왕권 과시의 측면을 조명한 연구들⁷은 모두 이러한 흐름에 포함된다. 이 선행 연구들은 국가 의례의 정치성과 정국 변화 간의 연계를 밝혀내며, 정치사와 의례 제도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연구 흐름을 형성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속오례의』에 수록된 의례들의 정치적 맥락이나 제도화 배경에 대한 분석이 일부 이루어졌을 뿐, 개별 의례의 정치적 기획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하거나 수록 항목 간의 정치적 연계를 구조적으로 고찰하려는 시도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

-
- 4 박수정, 「영조대 『國朝續五禮儀』 편찬과 정치적 성격」,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1~282쪽.
- 5 김백철, 「英祖의 尊號加上과 정국변화」, 『규장각』 39(2011), 33~65쪽; 박나연, 「1827년 純祖의 尊號儀禮 진행과 그 의미: 지식 활용을 통해 본 명분론 강화 양상」, 『인문학연구』 56(2018), 439~473쪽; 우정, 「숙종·영조대 大王大妃 上尊號儀의 시행과 의의」, 『조선시대 사학보』 94(2020), 239~273쪽; 권은나, 「숙종대 稱慶論의 제기와 시행」, 『조선시대사학보』 97(2021), 173~200쪽.
- 6 신진혜, 「영조대 개선 의례의 정비와 그 의의: 『국조속오례의』 선로포·현관의례」, 『태동고전연구』 34(2015), 7~41쪽; 김윤희, 「영조대 왕실연향의례의 국가전례 편입과 실행의 특징」, 『국학연구』 54(2024), 73~110쪽.
- 7 김세은, 「『의주등록』을 통해 본 영조 대의 국가 의례와 왕실 행사: 영조 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35(2020), 99~128쪽; 신진혜, 「英祖代 祭享에 대한 국왕 親臨 절차의 추가적 정비와 의미: 宗廟 親享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사총』 102(2021), 137쪽; 하서정, 「영조대 기우제 親行과 儀註의 정비」, 『조선시대사학보』 109(2024), 115~147쪽.

는 개별 의례 단위 분석의 필요성을 환기하면서, 두 항목의 동시 수록과 정치 국면과의 연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속오례의』에 수록된 의례들이 정국 변화와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 결합이 이루어졌는지를 해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1740년(영조 16) 경신처분이라는 정치 상황과 국왕 주도의 의례 기획을 실현하는 데 김재로(金在魯, 1682~1759)의 보좌와 조율 역할에 주목하여, 〈친림전향축의〉와 〈상존호책보의〉가 어떻게 『속오례의』에 제도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두 의례는 『속오례의』에 ‘경신(庚申)’이라 명 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영조가 정치적 정비 과정에서 의례를 활용한 방식과 그 구체적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요컨대, 『속오례의』에 수록된 의례 중에서도 〈친림전향축의〉와 〈상존호책보의〉를 중심으로, 이들이 경신처분과 어떤 방식으로 연동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당시 최고위 실무자가 이를 어떻게 뒷받침했는지를 규명한다.

〈친림전향축의〉는 국왕이 친히 제례를 주관하는 신하들에게 향과 축문을 전달하는 의례이며, 〈상존호책보의〉는 왕실 구성원에게 준호와 책보를 바치는 예식으로, 정치적 정당성과 권위를 강화하는 상징 장치였다.

두 의례는 김재로가 국왕의 정치적 의도를 잘 포착하고 이에 호응함으로써, 해당 기획이 신료 집단 내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고 의례 형식으로 구체화 되도록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보여 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국가 의례가 정치 권력의 정당화 및 질서의 재편이라는 맥락 속에서 실천적으로 운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는 청풍 김씨(淸風金氏) 가문이 당대의 정치·의례 국면에서 발휘한 지속적 영향력과 위상을 함께 조명함으로써, 조선 후기 정치사 속에서 이들의 의례 활동과 정치적 입지를 이해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경신처분과 의례 정비의 정치적 배경

경신처분은 1740년(영조 16)에 단행된 강경한 조처로, 영조가 즉위 초부터 추진해 온 탕평책을 공고히 하는 정치 국면이었다. 이러한 전환은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신임옥사의 여진 속에서 노론과 소론 간의 대립이 여전한 가운데 영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취한 전략이었다.

경신처분의 정치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정치사 연구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발표된 일련의 연구들⁸은 영조 대 정치사의 전개 과정, 정국 재편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재구성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경신처분과 의례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 장에서는 경신처분의 정치사적 맥락과 함께, 이를 둘러싼 주요 의례들의 시행 양상과 편찬 과정에 주목한다. 특히 『속오례의』의 시행 연대 표기를 단서로 의례와 정치 국면의 맞물림을 개관한다. 세부 평가는 IV장에서 논의하겠다.

『속오례의』에 ‘금상경신(今上庚申)’(영조 16, 1740)이 명기된 의례는 〈친립 전향축의〉와 〈상존호책보의〉 두 항목뿐이다. 〈서계의〉 등 친립 형식을 떤 다른 의례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정치적 맥락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을 설정했다.

〈친립전향축의〉는 영조가 자신의 통치 의지를 신료들에게 직접 천명하고자 했던 실천적 시도로, 친립이라는 형식을 통해 결단을 제도화했다. 〈상존호책보의〉는 왕실 권위와 정국 안정을 상징적으로 부각하며 통치 질서를 강

⁸ 정만조, 앞의 글(1997), 73~95쪽; 정만조, 「英祖代 初半의 蕩平策과 蕡平派의 活動: 蕡平基盤의 成立에 이르기까지」, 『진단학보』 56(1983), 27~66쪽; 정만조,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蕡平策의 再定立: 小論蕩平에서 老論蕩平으로의 轉換」, 『역사학보』 111(1986), 63~111쪽.

화하는 수단이었다. 두 의례 모두 통상적 관례가 아니라, 경신처분의 전개와 맞물려 시행된 사례였다.

영조는 이 시기에 공식 의례와 행정 업무를 중단하고 상소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국정을 강하게 장악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삼사와 대신들의 대거 파직, 유척기의 해임에서 비롯된 신하들의 반발에 대응한 것으로, 이후 석위(釋位) 선언과 철회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인사 단행 이상의 의미를 지닌 정치 질서 재편을 위한 결정이었다. 특히 영조는 노론 완론의 김재로와 소론 완론의 송인명을 중용함으로써 탕평 기반을 재구축하고자 했으며, 유척기의 해임은 단지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완론 중심 통치 체제 정비의 신호탄이었다.

이 시기 김재로는 경신처분이라는 정치적 정비 국면에서 중요한 의례 시행에 참여하며 영조의 탕평책을 뒷받침했다. 특히 그는 당시 시행한 의례를 『속오례의』 편찬 과정에서 규범화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속오례의』 편찬에 참여한 실무진이 대체로 소론 인물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⁹ 그러나 바로 그 점에서 김재로의 역할은 더욱 주목된다. 그는 노론 정승으로서,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던 소론 계열 실무자들의 편찬을 지휘한 인물이었다. 다시 말해, 『속오례의』 편찬은 단순한 학술적 사업이 아니라 경신처분 이후 탕평 정치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조율과 권력 균형의 결과물이었다.

김재로는 『속오례의』 편찬 당시 임금 아래 신료들의 수장으로서 의례서 편찬의 총괄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의례의 제도화와 실제 시행을 이끌 어냈으며 편찬서 명칭에까지 관여했다. 이러한 정황이 『승정원일기』 및 『영조실록』 등에서 확인된다. 이는 그가 단지 정승직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⁹ 박수정, 앞의 글(2024), 58~74쪽.

경신처분과 연계된 핵심 의례를 실질적으로 구상하고 실행한 책임자로 기능했음을 보여 준다. 관료의 의례 참여는 지위에 따른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다음 장에서 살펴볼 활동들을 통해 김재로가 의례 정치의 실현자이자 왕의 통치 전략을 실행한 중핵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재로의 이러한 역할은 그의 가문적 배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풍 김씨는 김중방(金仲房) 계열(일명 인백계)과 김중원(金仲源) 계열로 나뉘며, 이 연구에서는 전자에 해당하는 인백계 가문에 주목한다. 이 가문은 고려 아래 중앙 정계에서 활동해 온 명문가로, 조선 후기에는 김구(金構, 1649~1704)를 시작으로 김재로·김약로(金若魯, 1694~1753)·김상로(金尙魯, 1702~1766), 그리고 김치인(金致仁, 1716~1790) 등 3대에 걸쳐 5명의 정승을 배출하며 정치와 의례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¹⁰

김재로의 부친 김구는 숙종 대 정승을 역임했고, 그 역시 부친 김징(金澄, 1623~1676)으로부터 율곡 이이의 학통을 계승한 기호학파의 중심 인물인 송준길(宋浚吉)의 학문을 이어받았다. 김징은 예학의 실천을 중시하며 단종복위 의례 정비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¹¹ 이는 성리학적 도덕 질서를 의례를 통해 구현하려는 실천이었다. 이러한 학문적·정치적 전통은 김재로에게 계승되었으며, 그는 『속오례의』 편찬을 통해 경신처분 시기에 시행된 의례를 국

10 청풍 김씨 가문에 대한 정치·의례 활동과 계보적 흐름에 관해서는 다음 논저들을 참고 할 수 있다. 정만조, 「朝鮮中後期 京畿北部地域의 士族變遷과 集姓村의 發達」, 『북악사론』 8(2001), 331~409쪽; 조준호, 「조선 숙종~영조대 근기지역 노론학맥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23~33쪽; 김학수, 「청풍김씨 봉오 가문의 연원: 인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정조시대 학술 관료, 봉오 김종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학술대회, 2017.12.19), 117~126쪽; 황주영, 「18세기 청풍김문의 반척신 정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8), 5~13쪽.

11 이근호, 「16~18세기 단종복위운동 참여자의 복권 과정 연구」, 『사학연구』 83(2006), 150~151쪽; 한기범, 「기호학맥과 동춘당의 학문연원」, 『충청학연구』 6(2005), 73~101쪽; 황주영, 앞의 글(2018), 8~13쪽.

가 전례의 체계로 확립했다. 1744년 편찬된 『속오례의』에는 김재로가 조부·부친에게서 계승한 단종복위 관련 의례 항목들, 예컨대 가례의 <친립반교진하의(親臨頒教陳賀儀)>, 흥례의 <장릉복위의(莊陵復位儀)>가 포함되어 있어, 가문의 학문과 정치 활동이 영조 대 의례 정책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더불어 그의 종제인 김약로·김상로는 『속오례의』, 『상례보편』, 『속오례의보』 등 영조대 주요 의례서 편찬에 참여했으며 아들 김치인도 『상례보편』 편찬에 이름을 올렸을 뿐 아니라 후일의 다른 존호 의례 시행에서도 중심적 기능을 담당했다.¹² 이처럼 청풍 김씨 인백계는 조선 후기 의례와 정치의 교차점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의 활동은 경신처분 시기 의례 정비와 긴밀히 맞물려 있었으며, 김재로는 그 중심에서 가문의 전통을 토대로 편찬 작업을 주관했다.

III. <친립전향축의>와 <상존호책보의>의 시행과 정치적 함의

『속오례의』에는 총 56개의 의주가 수록되어 있으며, 구성은 길례 22항목, 가례 20항목, 군례 3항목, 흥례 11항목이다.¹³ 『속오례의』에는 각 의주마다 시

12 김재로의 아들 김치인은 김백철, 앞의 글(2011), 52~55쪽에서 4차 존호의 핵심 인물이다.

13 <친립전향축의>는 길례 22항 가운데 영조 대 처음 시행된 14항 중 하나이며, 나머지 8항은 선대 왕대에서 이미 시행된 의례들에 해당한다. 이는 영조가 의례를 통해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적 정당성과 통치 기반을 재구축하고자 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또한 <상존호책보의>는 『속오례의』에 수록된 가례 20항 가운데 영조 이전에 시행한 13항에 해당하는데, 이는 영조 대에 시행된 7항과 비교할 때, 선대의 권위와 사례를 참조·계승함으로써 통치 기반의 정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전략이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의주별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항목 분석은 박수정, 앞의 글(2024), 176~239쪽을 참고할 수 있다.

행 연도 등을 포함한 연혁이 상세히 명기되어 있다.¹⁴ 이 가운데 ‘금상경신(今上庚申)’(영조 16, 1740)이 시행 연도로 명기된 의례는 〈친립전향축의〉와 〈상존호책보의〉 두 항목뿐으로, 이 두 의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의례의 시행은 연혁 기록에만 그치지 않는다. 1740년 경신처분을 맞아, 영조는 의례를 정치적 전략으로 삼아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 구조를 새롭게 형성하려 했다. 이하에서는 두 의례가 지닌 상징성과 그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친립전향축의〉의 시행 배경과 정치적 활용

〈친립전향축의(親臨傳香祝儀)〉는 『속오례의』 길례 항목 가운데 영조 16년(1740)에 새로 제정된 의례로, 해당 책에 “금상 경신년에 비로소 시행되었다 [今上庚申 始行此儀].”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향축은 왕이 축문에 서명한 뒤 향과 함께 현관에게 전달함으로써 제사의 주체로서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절차로, 『세종실록』과 『국조오례서례』에서 그 기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성종 대를 지나며 축소되었으나, 숙종과 영조 대에 강조되었다.¹⁵ 특히 영조는 신하 대신 스스로 향과 축문을 전달하는 친립의 의례를 행하면서, 이를

14 영조 대 시행된 길례 14항의 연혁을 기준으로 시행 연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조 15년 4항, 영조 16년 2항, 영조 2년 2항, 영조 23년 3항, 영조 3년 1항, 영조 7년 1항이며, 이 외에 시행 연대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영조 대에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의주 1항이 포함된다.

15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서례』에서 ‘傳香儀’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세종실록』 「오례」에 ‘전향의(傳香儀)’가 수록되었으며, 『국조오례서례』에는 이와는 조금 변형된 ‘전향의’가 실려 있다. 한형주, 「조선시대의 先蠶祭와 親蠶의식」, 『한국사학보』 58(2015), 137쪽; 『조선왕조실록사전』, 「전향축(傳香祝)」([[https://dh.aks.ac.kr/sillokwiki/index.php/전향축_\(傳香祝\)](https://dh.aks.ac.kr/sillokwiki/index.php/전향축_(傳香祝))]).

명문화함으로써 제사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비록 〈친립전향축의〉는 1740년에 시행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왕이 직접 향을 내리고 축문을 전달하는 ‘친전향(親奠香)’ 형식의 의례는 숙종대부터 이미 거행되어 왔다. 예컨대, 숙종은 1707년 주강(畫講) 중 친전향을 시행했고,¹⁶ 영조도 1728년(영조 4) 무신란 진압 이후 이를 거행한 바 있다.¹⁷ 그러나 1740년의 시행은 앞선 사례들과는 달리 경신처분의 정치 국면에서 왕권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획으로 수행되었다. 〈친립전향축의〉는 전례의 관습적 계승이 아니라, 국왕의 정치적 의도를 의례 형식으로 구체화한 선택이었으며, 이를 통해 영조는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당대 질서를 재정립하고자 했다.

이제 경신처분이 전개되는 정치적 국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이때 행해지는 〈친립전향축의〉 실제 시행 시점, 일정 조정, 시행 기사 등을 통해 정치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740년 5월 19일 밤, 영조는 좌의정 김재로를 비롯한 대신들을 불러들여 유봉휘의 상소가 소론 정국을 어지럽혔음을 지적하고, 유척기의 파직까지 단행했다.¹⁸ 이는 ‘경신처분’의 실질적 개시를 알리는 국면으로, 영조가 임인사 이후 누적된 정치적 불안을 정리하고자 결단을 내린 상징적 장면이다. 5월 20일, 현납 서명신 등이 대신들의 파면과 삼사의 삭직을 철회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영조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¹⁹

임금이 모든 공사(公事)를 정원(政院: 의정부)에 머물러 두고 입계(入啓)하지 말

16 『承政院日記』숙종 33년(1707) 10월 3일.

17 『承政院日記』영조 4년(1728) 4월 21일.

18 『英祖實錄』16년(1740) 5월 19일.

19 『英祖實錄』16년(1740) 5월 20일.

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승지들이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려고 청대(請對)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판부사 김홍경(金興慶) 등이 경재(卿宰)와 함께 빈청(賓廳)에 모여 진대(進對)를 계청(啓請)하였으나 또한 윤허하지 않았다. 이튿날 또 빈청에서 계청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²⁰

이 기록에서 보이는 “모든 공사를 정원(政院)에 머물러 두고 신하들의 입계를 받지 말라.”는 왕의 명령은, 곧 등장하는 ‘석위’ 선언이다. 이는 삼사와 대신들의 대거 파직, 유척기의 해임 등으로 표면화된 정치적 충돌에 대응한 것으로, 영조는 신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5월 25일, 좌의정 김재로와 우의정 송인명 등 대신들의 간곡한 건의를 받아들여 종묘에 나아가 고묘를 행하고, 이튿날에는 친정을 명하면서 결국 자신의 ‘지나친 분부’를 거두었다.

임금이 대신(大臣)에게 말하기를, “경들이 동조(東朝)께 청대(請對)한 것은 어쩔 줄 모르는 때인 까닭에서 나왔더라도, 그 사례(事禮)는 어떠한가?” 하니, 김재로 등이 말하기를, “대명(待命)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곧 물러가 대명하니, 임금이 다시 소견(召見)하였다. 김재로·송인명(宋寅明) 등이 방명(邦命)을 다시 정한 것은 중흥(中興)의 조짐이라 하여 진하(陳賀: 축하의 뜻을 올리는 의례 행위)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경사이기에 축하할 만하겠는가?” 하였다. 김재로 등이 말하기를, “날을 가려 진하하고 고묘(告廟)하고 반사(頒赦: 경사가 있을 때 나라에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던 일)하는 일을 어찌 그만 둘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즉일에 길일(吉日)을 가리는 것도 전례는 있으나, 오늘의 일은 내가 좋아서 한 일이 아닌데 어찌하여 반드시 축하해야 하

20 『英祖實錄』16년(1740) 5월 21일.

겠는가?” 하였다. 신하들이 소리를 같이하여 힘껏 청하였으나, 임금은 오히려 윤허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또 번갈아 아뢰기를, “이것은 그만둘 수 없는 천리(天理)이니, 전하께는 따르지 않으시면 빈계(賓啓: 의정들이 빈청에서 나랏일을 의논하여 임금에게 아뢰던 일)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하를 받는 것은 당초에 생각한 것이 아니나, 경들이 빈계를 낼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더욱 크게 별일세라 염려되므로 우선 애써 따르겠다.” 하고, 이어서 날을 잡지 말고 고묘하라고 명하고, 또 이튿날 친정(親政)할 것을 명하고 말하기를, “인묘(仁廟)께서 반정(反正)한 뒤에는 서궁(西宮)에서 친정하셨으니, 이제 이를 이어서 하겠다.” 하고, 또 20일 이후에 내린 지나친 분부는 모두 도로 거두라고 명하였다.²¹

이 지나친 분부가 6세의 어린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벌인 석위 사건이다.” 영조는 이때 〈친립전향축의〉를 시행했다. 이는 전향축의 형식을 계승하면서도 ‘친립’이라는 요소를 더해,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던 5월 21일의 ‘공사 정지 및 입계 거부’ 명령에서 비롯된 정치적 긴장을 의례로 수습하고 상징화한 것이었다.

한편 5월 25일, 영조는 친전향 시행을 앞두고 시사(視事) 중단을 지시했고, 27일로 예정되었던 수향(受香) 의식에 대해 친히 전향하겠다는 전교를 내렸다.²² 26일에는 시각을 묘시 초삼각(오전 5시 30분경)으로 명시했다.²³ 그러나 28일에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²⁴ 이 의식은 29일에 실제 거행되었다.²⁵ 이로써 일정이 이틀가량 연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21 『英祖實錄』 16년(1740) 5월 25일.

22 『英祖實錄』 16년(1740) 5월 29일.

23 『承政院日記』 英祖 16년(1740) 5월 25일.

24 『承政院日記』 英祖 16년(1740) 5월 26일.

25 『承政院日記』 英祖 16년(1740) 5월 28일.

26 『英祖實錄』 16년(1740) 5월 29일.

조선시대 국가의례의 일정 조율은 혼한 일이었지만, 〈친립전향축의〉 경우 형식적 절차상의 변경을 넘어, 국정 상황과 왕의 일정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기획된 정치적 연출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이는 경신처분이라는 특수한 국면에서 시행된 비정례적 의례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친전향〉은 하향대제, 추향대제, 초구일 사직대제와 같은 정례적 제사 일정과 달리, 5월 27일 독립적으로 거행되었다.²⁷ 이처럼 제사 일정에 부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정된 일정은 국왕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천명하거나 특수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례적 기획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의례적 연출은 기존의 제사 참여 방식과도 차이를 보인다. 조선 시대 국왕이 초헌관 등으로 제사에 직접 참여한 사례는 일반적이었지만, 〈친립전향축의〉는 향과 축을 전하는 핵심 제사의례 행위를 국왕이 직접 수행하도록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는 단지 예의 정성을 드러낸 데 그치지 않고, 왕이 조상 앞에서 도덕적 정통성과 통치의 연속성을 천명하며 정치적 입장을 직접 시각화한 상징적 실천으로 기능했다.²⁸

특히 경신처분이라는 국면에서 선대의 의례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형식을 통해 왕권의 주도권을 명확히 부각하는 기획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향과의 차별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친립전향축의〉는 왕권의 정치적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실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상징적 의례 기획에 김재로의 핵심적인 정치적 조율이 있었다. 김재로는 단순한 동조자 이상의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왕권 중심

27 관련 내용은 박수정, 앞의 글(2024), 217쪽 참조.

28 이러한 친행 형식의 강화는 같은 시기 시기시학례, 친경례, 대사례, 대보단 제례 등에서 국왕이 직접 참여하는 의례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경향과도 연결되며, 영조 대 왕권의 의례적 연출이라는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신진혜, 앞의 글(2021), 11~18쪽에서는 영조 대에 기존 '전향축' 의례 절차를 '친립전향축'으로 재정비하는 과정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의 의례 재구성을 실현했다. 그는 송인명과 함께 “옛 나라의 명운을 새롭게 바로잡은 것[邦命]은 중흥(中興)의 조짐”이라고 친양하며, 좌의정으로서 왕의 결정을 부각하고, 신하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이후 이광좌가 사망하면서 김재로는 영의정에 올라『속오례의』 편찬 실무를 총괄하는 최고위 책임자로 자리했다.²⁹ 그는 정치 성향이 달랐던 이종성·윤광소 등 소론계 실무자들을 통솔하며, 편찬서의 명칭 제안³⁰과 국왕 전교 공표 등 핵심 절차에 깊숙이 개입했다. 또한 국왕의 재가를 받는 영의정의 수교 체계 아래에서 편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경신처분 시기 노론 주도의 탕평정국 속에서 의례 편찬의 방향과 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 정치적·제도적 권한을 행사했다.

결론적으로 <친립전향축의>는 관례적 절차의 부활이 아니라 영조가 자신의 결단과 정치적 정당성을 천명하기 위해 선택한 상징적 의례였다. 1775년(영조 51), 인원왕비의 기일을 맞아 다시 거행된 <친전향축>³¹ 역시 정치적 안정과 왕실 정통성 확보를 위한 의례 활용이 지속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³²

이 의례는 이후 정국 수습을 위한 정치-의례 기획의 서막이 되었다. 또한 존호 의정과 『속오례의』 편찬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정 전략 속에서 김재로

29 이광좌가 소론의 영수로서 영의정에 올랐던 정황과 더불어, 이후 김재로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영의정으로 오른 정치적 배경 및 위치는 다음 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정만조, 앞의 글(1986), 75~77쪽, 86~88쪽.

30 책명을 결정하는 데 1740년(영조 16) 6월 3일 영조는 『오례의』의 속편으로 삼계 함이 가하다고 했고, 1741년 6월 5일에는 이덕수가 수정 중인 『오례의』의 이름을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증보오례의(增補五禮儀)』로 할 것을 제안했다. 『承政院日記』英祖 16년(1740) 6월 3일; 『英祖實錄』17년(1741) 6월 5일.

31 『英祖實錄』51년(1775) 3월 23일.

32 이는 시기적으로 후대 사례지만, 즉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원왕비[정만조, 앞의 글 (1997), 76~78쪽; 정만조, 「영조와 그 시대」, 『영조대왕자료집 1』(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b), 19~41쪽]의 기일에 거행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위기 극복과 왕실 안정 도모라는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의 조정자 역할은 한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의례가 곧 정치였던 18세기 조선의 통치 특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 <상존호책보의>의 정치적 성격과 상징성

영조 16년(1740)에 시행된 <상존호책보의>는 통상적 예우 확대를 넘어서 왕실 권위의 재정립과 정국 안정이라는 정치적 전략이 반영된 의례였다. 이미 의례 제도화 작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상존호책보의>는 그 정치적 기회를 뒷받침하며 존호 의정을 통해 왕실 권위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후속 장치로 기능했다. 여기서는 이 의례가 시행된 구체적 배경과 절차를 살펴 및 관련 사료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경신처분 시기의 정국 정비와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 전략으로 기여했음을 분석한다.³³

『속오례의』에 수록된 가례 <상존호책보의>는 길례 <친림전향축의>와 함께 ‘경신년(庚申年, 1740)’과 명시적으로 연결된 단 두 항목 중 하나로서 검토 대상이 되었다. 즉, 『속오례의』<상존호책보의> 항목의 연혁에는 “구의가 전하지 않아, 숙종 계사년(1713)에 비로소 의절이 마련되었고, 지금 임금의 경신년(1740)에 이를 따라 시행했다[舊儀不傳 肅宗癸巳始有儀節 今上庚申遵行].”라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다. 이로써 이 의례는 단지 일시적인 정치 행사가 아니라 제도화의 일환으로 편입되었음을 보여 준다.

영조 16년(1740)에 시행된 <상존호책보의>의 정치적 합의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 존호례가 통치권의 재조정이나 정치 질서

33 김백철, 앞의 글(2011), 41~44쪽은 영조 대 이루어진 1차 존호 가상을 경신처분 이후 정치 일정을 마무리짓는 상징적 절차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 글은 존호 가상이 국왕이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구상한 전략적 장치였다는 점, 그리고 그 실천에서 김재로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의 전환기와 어떻게 결합되어 왔는지를 선례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속오례의』〈상존호책보의〉 연혁에 명시되어 있는 ‘숙종 계사(癸巳)’를 근거로 당시 왜 이런 의절이 마련되었는지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1713년(숙종 39) 3월 9일 임금이 승정전에 나아가 존호를 받았다. 그 과정을 추적해 보자. 먼저 이해 1월 5일 대신들이 즉위 40년을 경축하여 칭경(稱慶)과 존호를 올릴 것을 청하니 칭경에 대해서만 윤허하거나, 1월 6일 즉위 40년을 기념하여 승지 신심(申鐸)이 진연(進宴)을 베풀고 존호를 올릴 것을 진달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³⁴ 하지만 거듭된 상소 끝에 1월 17일 이를 윤허하면서³⁵ 두 달 뒤 존호를 받게 된다. 이 존호 의례의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신이 논하는 다음 글을 주목해 보자.

사신(史臣)은 논한다. 임금의 겸덕(謙德)이 지극한데, 조신(朝臣)들이 이를 받아들여 따르는 의리(義理)를 생각하지 않고, 마침내 강박하여 청을 준허(準許)하고 야 말았다. 따라서 10여 년 동안 간직해 온 겸손한 덕이 시커멓게 어두워 발양(發揚)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특히 백세의 비난이 두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주자가 말하기를, “존호가 만일 옳지 않다면 임금이 스스로 이회(理會)할 것이니,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지금 임금의 청허(聽許)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혹자는 당초에 성상의 뜻이 굳건히 결정된 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기도 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³⁶

이 논평은 존호 청원이 예우가 아닌 정치적 압력과 당파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존호 청원에 찬성한 인물들은 노론 중심이었

34 『肅宗實錄』39년(1713) 1월 5일, 1월 6일.

35 『肅宗實錄』39년(1713) 1월 17일.

36 『肅宗實錄』39년(1713) 1월 17일.

고, 반대한 인물들은 소론에 가까웠다. 이는 이후 병신처분(1716)으로 이어진다.³⁷

더욱이 숙종이 존호례를 수용한 해는 즉위 40주년이었지만, 과거 선례는 없었다. 숙종은 1703년(숙종 29)에도 즉위 30주년을 기념한 존호 청에 부정적이었으며, 선조의 예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즉위 경축과 무관하게 존호가 정치 쟁점으로 작동한 사례였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선조가 즉위 39년 만에 존호를 받은 것은 명나라 세종의 예를 따른 마지못한 조치였으며, 조선에서 즉위 30년이나 40년을 기념한 존호례는 전례가 없었다고 평가한다.³⁸

이러한 상황은 회니시비(懷尼是非, 1669, 현종 10), 예학 논쟁(최석정의 『예기유편』, 1710), 『가례원류』 편찬자 논란(1711) 등으로 누적되어 온 노론과 소론 간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비롯되었으며, 결국 1716년의 대규모 정치적 처분으로 귀결되는 당쟁 구도와도 밀접히 연결된다. 존호를 청한 주체들이 이후 병신처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존호 의례는 일반적 왕실의례가 아닌 권력 구도의 대표적 사건이었다.³⁹

결론적으로 숙종 대의 존호례는 당대 정치 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영조 대의 <상존호책보의>에 재현되었다. 존호례는 당파적 갈등과 예학적 명분을 매개로 한 정치 기획이었고, 『속오례의』에 편입됨으로써 국정 운영의 제도적 기반으로 전환되었다.

영조 16년의 <상존호책보의>는 경신처분이라는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제기되고 시행된 점에서 전례의 반복에 불과한 존승 의례가 아니었다. 이 의례는 영조의 정치 전략으로서 기획되었으며, 김재로 등 정치 엘리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매개함으로써 이후 『속오례의』 편찬으로 이어지는 핵심 고리가

37 『肅宗實錄』 39년(1713) 1월 8일, 1월 9일, 1월 10일, 1월 15일.

38 『肅宗實錄』 29년(1703) 3월 4일.

39 박수정, 앞의 글(2024), 242~249쪽, 책보 의례에서 다룬 숙종 대 논의를 참고함.

되었다.

1740년 6월 13일 영조는 경신처분의 일환으로 신임옥사 관련 옥안의 죄인 명단과 계묘년(1723, 경종 3년) 정시(庭試) 합격자 명단을 수정하고 억울하게 처벌받은 옥사를 바로잡는 조치를 단행했다.⁴⁰ 6월 22일, 대제학 오원(吳瑗)이 반교문(頒敎文)을 올렸고, 6월 25일에는 김재로 등이 영조에게 존호를 올리기를 청했으나 영조는 이를 즉시 윤허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재로와 송인명 등이 여러 차례 간곡하게 아뢴 끝에 윤6월 4일에 이르러서야 영조는 존호 올리는 것을 마침내 허락했다.⁴¹ 윤6월 8일, 좌의정 김재로와 우의정 송인명은 여러 고위 관료들을 이끌고 대전[大殿, 영조], 대왕대비전[인원왕후], 중궁전[정성왕후]의 존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끝에 영조에게는 ‘지행순덕영모의열(至行純德英謨毅烈)’이라는 존호를, 대왕대비에게는 ‘현의(顯翼)’이라는 존호를, 중궁에게는 ‘혜경(惠敬)’이라는 존호를 올리기로 최종 결정되었다.⁴² 그리고 마침내 7월 20일, 성대한 존호 책보 의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영조가 존호를 받을 때 좌의정 김재로는 백관을 거느리고 대전에 나아가 존호를 받들어 올렸으며, 대비전과 중궁전에 존호를 올리는 의식 또한 함께 거행했다.⁴³ 이때의 존호는 단일 군주가 아니라 국왕, 대왕대비, 중궁에게 동시에 부여되었으며, 이는 ‘왕실 권위’의 통합을 지향한 정치적 조치였다.

40 『英祖實錄』16년(1740) 6월 13일에 근거한 정만조, 앞의 글(1986), 86~90쪽; 정만조, 앞의 글(1997), 72~85쪽.

41 『英祖實錄』16년(1740) 6월 22일, 6월 25일, 윤6월 4일.

42 『英祖實錄』16년(1740) 윤6월 8일.

43 『英祖實錄』16년(1740) 7월 20일; 이와 관련된 의례는 『속오례의』에 수록된 〈大王大妃上尊號冊寶儀〉, 〈王妃上尊號冊寶儀〉, 〈王大妃冊寶親傳儀〉 등이며, 이 가운데 〈王大妃冊寶親傳儀〉는 경종 2년(1722, 임인년) 숙종비 인원왕후에게 존호 ‘慈敬’을 올릴 때 시행된 의식으로, 영조 대에 선의왕후에게 존호를 올릴 때도 연혁으로 활용했다. 박수정, 앞의 글(2024), 249~254쪽, 350~351쪽.

당시의 정세는 그해 5월, 영조 자신에게까지 혐의가 제기된 신임옥사를 노론의 주장에 따라 무옥(誣獄)으로 판정하는 조치에서 비롯되었다.⁴⁴ 이어 삼사의 노론 인사들이 연이어 파직되고, 임금이 일시적으로 석위를 선언하면서 정국은 불안정한 국면에 놓여 있었다. 앞서 검토했던 5월 27일의 〈친립전향축의〉와 7월 20일 〈상존호책보의〉는 이러한 경신처분기의 왕권과 탕평의 서사를 의례로 구현하여 복구를 표방한 장치였다.

이 과정에서 김재로는 소극적인 의례 수행자에 그치지 않고, 영조의 의도를 충실히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한 제도적 책임자의 역할을 했다. 그는 윤6월에 존호 의정을 주도하고, 7월 20일 직접 백관을 인솔하여 봉상례를 시행함으로써, 정치적 의례를 실현했다. 김재로가 직접 『속오례의』 편찬 명을 받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 명이 영조로부터 하달된 직후 그 실질적 추진을 주관한 이는 당시 좌의정이자 정승이었던 김재로였다는 점은 명확하다. 실제로 영의정으로의 승진은 같은 해 9월 28일에 이루어졌다.⁴⁵ 이러한 정치·의례 실무는 김재로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가문 차원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 위에 놓여 있었다.

요컨대, 〈상존호책보의〉는 경신처분기 권력 재편을 위한 전략적 의례였고, 그 실행 기반은 김재로 개인의 역량과 가문의 연속·전문성에 의해 뒷받침 되었다.

44 정만조, 앞의 글(1997), 94쪽.

45 『英祖實錄』 16년(1740) 9월 28일.

IV. 『속오례의』 수록과 의례의 정치적 제도화

지금까지 〈친립전향축의〉와 〈상존호책보의〉의 시행 배경, 절차, 정치적 맥락을 검토하고, 그 정치적 함의와 기획적 성격을 분석했다. 이 장에서는 두 의례가 『속오례의』에 편입되는 과정과 그 정치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제도화 과정을 재구성한다.⁴⁶

경신처분으로 시작된 정치적 조치는 이듬해 1741년 10월 『대훈』 반포까지 이어졌다. 정치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정치 질서의 재정비이며 탕평정국에서 일어난 정책적 처분처럼 보이지만, 그 심층에는 영조가 오랫동안 품어 온 ‘변성무(辯聖謠)’ 문제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노론은 ‘임인옥사에 왕 자신이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벗기는 것’보다 삼수옥(三手獄) 관련 노론 피죄자의 신원(伸冤)을 우선시했으나, 영조는 유척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노론의 충성됨을 공인하는 경신처분을 단행했다.⁴⁷ 소론 탕평의 명분이었던 노소론에 충역이 같이 있다는 논리를 부정한 것이었으나, 이에도 불구하고 노론이 여기서 더 나아가 소론에 대한 토역 문제를 꺼내자 영조는 노론을 축출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경신처분 속에서 〈친립전향축의〉를 거행하게 된 내막이었다.

그 진행 내용을 보면, 1740년 5월 중순, 유척기 파직을 기점으로 대신·삼사 인사 문제가 첨예하게 불거지자 영조는 공식 업무를 중단하고 상소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석위까지 표명하는 극단적 조치에 이르렀다. 그러나

46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 입장은 정만조, 앞의 글(1983), 27~66쪽; 정만조, 앞의 글(1986), 63~111쪽; 정만조, 「英祖代 私親追崇의 정치적 의미」, 『숙빈최씨자료집 3: 儀註, 式例』(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0), 25~43쪽과 궤를 같이한다.

47 이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은 『英祖實錄』 16년(1740) 정월 10일; 4월 10일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곧 번복하고 국정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친림전향축의〉를 거행했다.

이때 김재로와 송인명 등은 영조가 국정을 다시 정상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중홍의 조짐’이라며 영조에게 진하(陳賀)하기를 청했고, 영조는 처음에는 이를 완곡하게 사양했으나 결국 신하들의 요청을 수용하고 종묘에 고묘 할 것을 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재로가 영조를 ‘요순의 도에 부합하는 중홍 군주’로 상찬한 것은 가벼운 찬사가 아니었다. 이는 영조의 강경한 정치 행보를, 봉당의 폐해를 극복하고 군주 중심 통치를 회복한 정치적 전환점으로 여겨졌던 인조반정에 버금가는 ‘중홍의 조치’로 포장하고 정당화하는 언어적 장치였다.

5월 26일에는 친정을 명하고, 5월 29일에 〈친림전향축의〉를 거행했다. 본래 5월 27일로 예정되었던 이 의례가 연기된 것은 조정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례 일정이 정치적 의미와 맞물려 조정되었을 가능성은 시사한다. 그러한 배경에서 석위 선언을 철회하고 〈친림전향축의〉를 거행하게 된 것이다. 이어 6월 13일에 신임옥사 옥안 및 정시 명단을 정리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영조는 다음 해인 1741년 10월 『대훈』(신유대훈) 때 임인국안 자체를 소각해 경종 독살설에 관한 자신의 혐의를 원천적으로 없앤다. 그러므로 시기적으로 〈친림전향축의〉에 이어 행해지는 〈상존호책보의〉도 경신처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인 인사나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왕권의 정통성과 탕평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정치 전략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재로는 실질적으로 중심에 서서 〈친림전향축의〉를 정형화했다.

7월 20일에 거행된 존호 의례는 국왕, 왕비, 대왕대비에게 동시에 존호를 수여하는 형식이었으며, 이는 ‘왕실 공동체’의 권위를 복원하려는 정치적 기획이었다. 여기에는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원왕비를 포함한 왕실 구성원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었다. 왕은 임인사와 삼수 관련 혐의를 벗은 다음 바로 그 사친(私親) 추승을 추진

하여 정통성 강화를 시도했으므로, 〈상존호책보의〉 역시 왕의 정통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의례였다. 일정 연기와 병행된 의례의 다층 구성은 그 자체로 극적인 정치 연출의 장이었으며, 김재로의 실무 조율 역량이 드러나는 사례였다.

『속오례의』 편찬 명이 내려진 이후, 김재로는 전향축의례 및 존호 의정을 주도하며, 존호 명칭 결정, 백관 인솔, 문서 편찬 등 실제 집행을 총괄했다. 두 의례는 경신처분 시기의 정국 정비와 왕권 강화 전략이 의례와 기록으로 구체화된 장면을 보여 주었다. 김재로는 이러한 성과를 1744년 완성된 『속오례의』에 반영함으로써, 정치 의례를 하나의 서사로 편입시켰다.

두 의례가 “경신년에 비로소 시행되었다.”는 기술은 단순한 연대기 기록이 아니라, 정치적 맥락과 기획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편찬의 결과물이었다. 이에 따라서 『속오례의』는 정치와 의례, 제도와 기획이 만나는 접점으로, 당시 정치 질서의 구성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친림전향축의〉가 왕이 경신처분을 통해 임인옥에 대한 혐의를 벗고 통치 정당성을 천명하는 ‘왕권의 상징’이었다면, 〈상존호책보의〉는 왕비와 대왕 대비에게까지 존호를 수여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는 ‘왕실 권위 복원’이었다. 두 의례는 경신처분이라는 정치 국면에서 연속적으로 시행되고 공식 매뉴얼인 『속오례의』에 함께 수록되었다.

이 구조는 의례가 관습적 전례의 반복이 아니라, 정치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였음을 시사한다. 김재로는 왕의 고뇌와 의중을 간파하고 이를 조율·제도화한 인물로, 정치와 의례, 문서와 제도, 왕과 신하를 매개했다. 그의 일정 조정·의정 조직·의례 집행 통합은 의례를 단순 행사에서 제도적 장치로 승화시켰다.

즉, 『속오례의』는 1740년 정국의 흐름과 정치 문화를 압축적으로 담아낸 기록이었다. 두 의례의 전개와 편찬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정치와 의례가 상

호 작용하며 제도화로 수렴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후 청풍 김씨 가문과 조선 후기 의례 정치사의 구조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

V.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영조 16년(1740) 경신처분이라는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시행된 두 의례, <친림전향축의>와 <상존호책보의>, 그리고 그 의례가 『속오례의』에 수록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조선 후기 정치질서 형성에 있어 의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고찰했다. 이 두 의례는 일회적 행사가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을 조직하고 왕권과 왕실 권위를 재정립하는 상징 장치로 기획되었으며, 편찬과 제도화 과정을 거치며 정치적 메시지를 규범화했다.

<친림전향축의>는 석위 파동 직후 국왕이 직접 전향에 참여하여 ‘왕정 정상화’를 의례적으로 천명한 사건이었다. 거행 시점의 전략적 조율과 친림 형식의 강화는 의례적 틀이 아니라 위기를 수습하고 정통성을 부각하는 장치였다. <상존호책보의>는 국왕·대왕대비·중궁에 동시 준호를 가상함으로써 왕실 공동체의 권위를 통합적으로 복원하고, 숙종 대 선례를 매개로 정통성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두 의례는 경신처분의 정치 상황 속에서 연출되고 『속오례의』에 수록되는 연쇄 과정 속에서 통치 질서 재편을 제도화했다.

경신처분은 인사·행정의 정비를 넘어 의례를 매개로 한 왕권의 정당화 전략이었다. 나아가 경신처분의 배경에는 변성무 문제와 더불어 영조가 즉위 초부터 일관되게 추구해 온 ‘왕위의 정통성 확보’라는 평생 과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사친추승 사업을 비롯한 정치·의례적 조치들로 단계화되며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영조가 평생의 고뇌로 간직한 측실 소생이라는 약점과 변성무 문제는 끊임없이 정국 변동과 맞물려 제기되었다.

김재로는 이러한 국왕의 불안을 간파하여 의례 편찬 과정에서 왕권 정통성 강화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했다. 이듬해 신유대훈에서 임인국안 소각이 단행되며 경종 독살설 관련 의혹에 대한 국왕의 입장이 문서화되었다. 하지만 후일까지 경종 독살설에 대한 불신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⁴⁸

영조는 의례와 문헌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통성을 방어하고자 했다. 이로써 경신처분과 그에 따른 의례들은 단순한 사안별 대응이 아니라, 국왕이 평생 추구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간 과정이었다. 정통성 불안은 경신처분·신유대훈·사친추승 사업 등으로 연속적으로 대응되었으며, 『속오례의』 편찬 시점에 박차를 가하는 동력이 되었다. 이 때문에 〈친립전향축의〉와 〈상존호책보의〉는 왕권 재정립의 상징 장치였을 뿐 아니라, 그 수록 과정을 통해 영조의 평생적 정치 과제가 구체화된 사례였다.

여기서 김재로의 기여는 커다. 그는 정승으로서 국왕의 의중을 의례 안으로 번역하고, 시기 조정·의정 조직·집행 지휘·명칭 확정·문서 편찬을 총괄하며 정치·의례·기록의 삼중 희로를 완성했다. 나아가 청풍 김씨 가문이 축적한 예학적 전문성과 관료적 실무 역량은 그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인적·지식적 인프라였으며, 영조 대 의례 정비의 지속성과 연속성으로 가시화되었다. 청풍 김씨 일가는 김재로를 비롯하여 김약로·김상로·김치인 등으로 이어지며 『속오례의』, 『속오례의보』, 『상례보편』 편찬에 참여했고, 의례와 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세대를 걸쳐 영향력을 발휘했다.

결과적으로 〈친립전향축의〉와 〈상존호책보의〉는 경신처분이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왕권을 재정비하고 통치 질서의 정당성을 시각화하는 의례적 언어로 작동했다. 『속오례의』는 정치적 기획이 의례로, 의례가 제도로 전화(轉化)

48 영조 31년(1755) 윤지의 육사[나주 패서사건] 때 申致運이 갑진년 이후 계장을 먹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통분해 마지않았는데, 이는 경종 독살설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가 아직도 완전히 변무되지 않은 데 따른 반응이었다. 정만조, 앞의 글(2010), 25~43쪽.

되는 과정을 기록한 산물이었다. 김재로는 그 과정을 매개하고 실현한 핵심 인물이자, 왕권을 위한 충실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는 『속오례의』의 다른 항목을 정국 변화와 연동해 분석하고, 후대 의례 운영과의 연속성을 추적함으로써 조선 후기 정치의례 문화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國朝續五禮儀』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2. 논자

권은나, 「숙종대 稱慶論의 제기와 시행」, 『조선시대사학보』 97, 2021, 173~200쪽.

김백철, 「英祖의 尊號加上과 정국변화」, 『규장각』 39, 2011, 33~65쪽.

김세은, 「『의주등록』을 통해 본 영조 대의 국가 의례와 왕실 행사: 영조 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35(2020), 99~128쪽.

김학수, 「청풍김씨 몽오 가문의 연원: 인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정조시대 학술 관료, 몽오 김종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학술대회, 2017. 12. 19, 117~126쪽.

김윤희, 「영조대 왕실연향의례의 국가전례 편입과 실행의 특징」, 『국학연구』 54, 2024, 73~110쪽.

박나연, 「1827년 純祖의 尊號儀禮 진행과 그 의미: 지식 활용을 통해 본 명분론 강화 양상」, 『인문학연구』 56, 2018, 439~473쪽.

박수정, 「영조대 『國朝續五禮儀』 편찬과 정치적 성격」,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박수정, 『국조속오례의, 그 정치성을 읽다』, 파주: 지식산업사, 2024.

신진혜, 「英祖代 凱旋 儀禮의 整備와 그 意義: 『國朝續五禮儀』 宣露布·獻馘儀禮」, 『태동 고전연구』 34, 2015, 7~41쪽.

신진혜, 「英祖代 祭享에 대한 국왕 親臨 절차의 추가적 정비와 의미: 宗廟 親享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사총』 102, 2021, 1~37쪽.

우정, 「숙종·영조대 大王大妃 上尊號儀의 시행과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94, 2020, 239~273쪽.

이근호, 「16~18세기 '단종복위운동' 참여자의 복권 과정 연구」, 『사학연구』 83, 2006, 150~151쪽.

정만조, 「英祖代 初半의 蕩平策과 蕩平派의 活動: 蕩平基盤의 成立에 이르기까지」, 『진단 학보』 56, 1983, 27~66쪽.

- 정만조, 「英祖代 中半의 정국과 蕩平策의 再定立: 小論蕩平에서 老論蕩平으로의 轉換」, 『역사학보』 111, 1986, 63~111쪽.
- 정만조, 「英祖代 御宴의 設行論議에 관한 一考察」, 『한국학논총』 20, 1997, 73~95쪽.
- 정만조, 「朝鮮中後期 京畿北部地域의 土族變遷과 集姓村의 發達」, 『북악사론』 8, 2001, 331~409쪽.
- 정만조, 「英祖代 私親追崇의 정치적 의미」, 『숙빈최씨자료집 3: 儀註, 式例』,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0, 25~43쪽.
- 정만조, 「조선의 禮治와 國朝五禮儀 편찬」, 『조선왕조의 五禮』, 장서각 아카데미 제1회 전문과정, 2012a, 7~19쪽.
- 정만조, 「영조와 그 시대」, 『영조대왕자료집 1』,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b, 19~41쪽.
- 정만조, 「영조시대의 이해방향: 繼述과 变화」, 『영조와 영조시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왕실문화강좌, 2016, 7~21쪽.
- 조준호, 「조선 숙종~영조대 근기지역 노론학맥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3~33쪽.
- 하서정, 「영조대 기우제 親行과 儀註의 정비」, 『조선시대사학보』 109, 2024, 115~147쪽.
- 한기범, 「기호학맥과 동춘당의 학문연원」, 『충청학연구』 6, 2005, 73~101쪽.
- 한형주, 「조선시대의 先蠶祭와 親蠶의식」, 『한국사학보』 58, 2015, 125~149쪽.
- 황주영, 「18세기 清風金門의 반척신 정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5~13쪽.
- Hevia, James L., *Cherishing Men from Afar: Qing Guest Ritual and the Macartney Embassy of 1793*, Duke University Press, 1995.
- Wechsler, Howard J., *Offerings of Jade and Silk: Ritual and Symbol in the Legitimation of the Tang Dynasty* (1st ed.), Yale University Press, 1985.

3. 기타

『조선왕조실록사전』, 전향축(傳香祝), [https://dh.aks.ac.kr/sillokwiki/index.php/전향축_\(傳香祝\)](https://dh.aks.ac.kr/sillokwiki/index.php/전향축_(傳香祝)).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영조 대 김재로의 의례 활동을 중심으로,『국조속오례의』편찬과 1740년 경신처분의 정치적 의미를 고찰했다. 특히『속오례의』에 수록된〈친림전향축의(親臨傳香祝儀)〉와〈상존호책보의(上尊號冊寶儀)〉가 경신처분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제정·시행되었음을 밝히고, 김재로가 이를 주도하여 영조의 정통성 강화와 탕평 국면 연출에 기여한 사실을 규명했다.

〈친림전향축의〉는 영조가 직접 향과 축을 전달하며 왕권의 상징성을 가시화한 의례였고, 〈상존호책보의〉는 존호를 통해 군주의 업적과 도덕적 권위를 제도화 한 장치였다. 두 의례는 단순한 예제 정비가 아니라 경신처분의 효과를 의례화하여 왕권을 재정립한 수단이었다. 김재로는 예학 전통과 가문적 기반 위에서 의례 실무와 정치 기회를 조율하며 영조의 전략을 현실화한 실행자로 자리매김했다.

결론적으로 경신처분은 인사·행정 개혁을 넘어 의례를 매개로 한 왕권 정당화 전략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영조가 평생 추구한 왕위 정통성 확보 과제가 있었다. 변성무 문제와 사친추승 사업은 신유대훈과『속오례의』의례들로 단계적으로 구체화되었고, 〈친림전향축의〉와〈상존호책보의〉는 이를 집약한 사례였다.

이 연구는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의례가 실질적 정치 도구였음을 보여 주며, 향후 영조·정조 대 의례 편찬과 가문별 의례 활동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다.

투고일 2025. 7. 4.

심사일 2025. 7. 28.

제재 확정일 2025. 8. 26.

주제어(keywords) 김재로(Kim Jae-ro), 국조속오례의(Gukjo Sogoryeui), 친림전향축의(Chinrim Jeonhyang Chuk-ui), 상존호책보의(Sangjonho Chaekbo-ui), 경신처분(Gyeongsin disposition)

Abstract

Political Design of Rituals in *Gukjo Sok-Oryeui* during the Gyeongsin Purge: Focusing on the Royal Incense Offering and Investiture Ceremony
Park, Sujeong

This study examines the political design of rituals in Kim Jae-ro's *Gukjo Sogoryeui* (Supplement to the National Five Rites) during King Yeongjo's reign. It focuses on the *Chinrim Jeonhyang Chuk-ui* (Royal Presence in the Incense and Invocation Ritual) and *Sangjonbo Chaekbo-ui* (Conferral of Honorific Titles and Seals), formulated and implemented during the 1740 Gyeongsin Disposition. These ceremonies symbolized Yeongjo's authority and institutionalized his legitimacy through direct royal participation and the formal recognition of his moral achievements. Kim Jae-ro, drawing on Neo-Confucian ritual expertise and clan resources, transformed these rites into political instruments that stabilized factional tensions and embodied the king's Tangpyeong policy. This analysis demonstrates that Joseon state rituals were not mere formalities but strategic tools of governance and legitimacy building, situating Gukjo Sogoryeui within the broader trajectory of Yeongjo's pursuit of dynastic stability.